

학교법인 송원학원

제 440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5인	0인

1.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11 : 00 (회의소집통보일 : 2023년 10월 23일, 10월 25일)
2. 장소 :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5인) : 고경주, 최승한, 이정주, 김옥현, 김남경
 - 불참임원
 - 이사 (3인) : 류중일, 손혜란, 송기석
 - 감사 (2인) : 이승연, 정진택
4. 안건
 - (1) 의안 제 1604호 여고 기간제교사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 (2) 의안 제 1605호 여상고 기간제교사 임용(안)
 - (3) 의안 제 1606호 여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 (4) 의안 제 1607호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정(안)
 - (5) 의안 제 1608호 여상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 (6) 의안 제 1609호 여상고 일반직원 전직 발령(안)
5. 의결사항
 - (1) 여고 기간제교사 사회(일사) []를 2023. 11. 13일자로 면직(의원면직) 발령하다.
 - (2) 여상고 체육 [] 【출산휴가 기간제교사 체육 [], 출산휴가 대체】를 기간제교사로 2023. 11. 3일자 【임용기간 : 2023. 11. 3 ~ 2024. 1. 31 : 90일】 임용하다.
 - (3) 여고 일반직 9급(기술직군) []을 2024. 1. 1일자로 면직(의원면직) 발령하다.
 - (4)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 관리를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사무직원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다.
 - (5) 여상고 일반직 9급(행정직군) []을 2023. 11. 1일자로 면직(의원면직) 발령하다.
 - (6) 여상고 일반직 8급(관리운영직군) []을 2023. 11. 1일자로 일반직 8급(행정직군)으로 전직 발령하다.

6. 회의내용

이사장 고정주 :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최에 앞서 의안 제 1607호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정(안), 제 1608호 여상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제 1609호 여상고 일반직원 전직 발령(안)이 긴급하게 추가 안건으로 통지 된 점 여러 이사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 440회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팀장 이정철 제 439회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이사장 고정주 : 제 439회 이사회 회의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고정주 :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제 439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440회 이사회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제 1604호 여고 기간제교사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정철 제안설명을 하다.)

☐ 여고 기간제교사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면직 년 월 일	면직 사유	담당 과목	비 고
송원 여고	기간제 교사	■■■■	■■■■	2023. 11. 13	원에 의함	사회 (일사)	2021.6.1 ~ 2023.11.12 (근속 : 2년 5월~)

이 사 김옥현 : 여고 기간제교사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은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이정주 : 김옥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정주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고 기간제교사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605호 여상고 기간제교사 임용(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정철 제안설명을 하다.)

☐ 여상고 기간제교원 임용(안)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소 지 자격증	임용 사유	임용기간	호봉	담당 과목	비고
송원 여상고	기간제 교사	■■■■	■■■■	■■■■	출산 대체	2023. 11. 3 ~ 2024. 1. 31 (90일)	■■■■	체육	신규 (출산휴가 ■■■■) 출산 : 23.11.3 ~ 24.1.31 (90일)

이 사 최승한 : 여상고 기간제교원 임용(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출산휴가 대체에 따른 기간제 임용은 해당 학교 공개전형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다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남경 : 최승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경주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상고 기간제교사 임용(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606호 여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정철 제안설명을 하다.)

☐ 여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소 속	직 명	직 급	직 군	성 명	생년월일	면직 년 월 일	면직 사유	비 고
송원 여고	사무보조 (조무)	일반직 9급	기술 직군	■■■■	■■■■■■■■	2024. 1. 1	원에 의함	23.7.1 ~ 23.12.31 (근속 : 6월) ■■■■■■■■

이 사 김옥현 : 여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은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이정주 : 김옥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경주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607호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정철 사무직원 인사규정(안)에 대해 자세히 제안설명을 하다.)

이 사 최승한 :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안)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원 인사 관리를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사무직원 인사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며 배부된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 중 앞표지만 간서명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 사 이정주 : 최승한 이사의 동의 및 제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경주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관리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608호 여상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정철 제안설명을 하다.)

☐ 여상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

소 속	직 명	직 급	직 군	성 명	생년월일	면직 년 월 일	면직 사유	비 고
송원 여상고	사무보조 (서무)	일반직 9급	행정 직군	■■■■	■■■■	2023. 11. 1	원에 의함	23.7.1 ~ 23.10.31 (근속 : 4월)

이 사 김옥현 : 여상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은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이정주 : 김옥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경주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상고 일반직원 면직(의원면직) 발령(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009호 여상고 일반직원 전직 발령(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정철 제안설명을 하다.)

☐ 여상고 일반직원 전직 발령(안)

- 일반직 8급 ■■■■ 【관리운영직군 → 행정직군】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현 직군	현 계급	현재급 임용일	현재급 경력	전직 직군	전직 계급	전직 임용일	비고
송원 여상고	■■■■	■■■■	2015. 7. 1	관리 운영	8급	2021. 1. 1	2년 10월	행정	8급	2023. 11. 1	

이 사 이정주 : 여상고 일반직원 전직 발령(안)은 현 직군에 8년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하였으며, 현재 담당 업무도 행정직군 해당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나 주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남경 : 이정주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경주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상고 일반직원 전직 발령(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하실 이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이정주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 · 김옥현 · 김남경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 사 최승한 : 이정주 이사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입니다” 하다.)

이사장 고경주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김옥현·김남경 이사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법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이사장 고경주 :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440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일 중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님 전원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 11 : 40

학교법인 송원학원

이사장 고경주 (서명)

이 사 최승한 (서명)

이 사 이정주 (서명)

이 사 김옥현 (서명)

이 사 김남경 (서명)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

송원
학원

송원
학원

학교법인 송원학원

학교법인 송원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송원학원 법인사무처 및 각 설치학교 일반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권자)

일반적인 임용은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임용)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에 관하여서는 임용권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해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4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조 (대우사무직원 선발 등)

- ① 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년 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 대우사무직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 ② 대우사무직원의 선발 임명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③ 대우사무직원의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근속승진제)

- ①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원 7급이하 직원중 근속승진 소요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7조 (파견근무)

임용권자는 산하학교 소속 일반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산하 다른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1. 동일 법인 학교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임용권자가 산하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공로연수)

사무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 3개월 이내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 할 수 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내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보수)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분 보장 및 징계)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는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정년)

- ①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13조 (당연퇴직 및 직원면직)

일반직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에 대하여는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1. 01. 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